
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(권영진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를 위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
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(안 제40조의2 신설 등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
는 것으로 보았음.

(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)